

국내법과 같은 효력 -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우리 정부, 실질 평등 위한 적극적 조치 즉각 수립해야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무 조항' 정부2실 등 기능 강화도 권고사항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이 된지 8주년을 맞는 우리 정부는 이제 실질적인 평등실현을 위해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의 적극적 조치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특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철폐협약 의무이행을 정부에 촉구해야하고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함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정책 지침이 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현재 1백18개국이 비준국. 우리나라는 83년 동협약에 서명, 85년 1월26일부터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동협약이 지닌 무게와 중요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법적 그리고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한국 여성의 공적부문 지위가 국제통계에 비해 크게 뒤쳐진 것은 여성차별 철폐협약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철폐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협약 당사국에 의무지운다는 점. 또 동협약은 특별히 정치적·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철폐 조치를 협약국의 의무로 하고 있어 동법에 근거한 여러가지 조치가 세계 각국에서 여성지위 향상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적법 및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유보조항 외에 모든 법적·형식적 차별조치를 다 철폐한 상태. 그러나 '실질적인 평등실현'에서는 작은 진전도 없다는 지적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들은 각종 입법 조치에 뒤따라 실질 평등을 이를 적극적 조치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 왔다는 것.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 교육, 연구기관에 대해 차별을 금하는 적극적 조치로 소수민족과 여성의 고용이 증가, 78년 크리버랜드, 오하이오주 5개 최대은행 조사 결과에서 여성사무직과 관리자의 비율이 3년간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스웨덴은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 20세~정년여성의 83%가 취업하는 세계 최고의 여성취업율과 남녀임금차가 가장 적은 결과를 얻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약공포

8주년을 맞은 현시점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의 미비로 우리나라 여성의 공적부문 지위는 국제 통계에 비해 매우 뒤져 있는 현실이다.

협약비준국들이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채용을 40%(노르웨이, 스웨덴)로, 고위직은 20% 여성임명을 목표로 설정했거나 여성정치 후보에 대한 훈련예산 지원(프랑스) 등으로 "할당이 아니라 동등한 대표성을 인정받는 의식전환 효과"를 보고 있다. 유엔자료에 의하면 국회여성 참여율이 15% 이상인 국가가 23개국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 국회의원 9.0%, 지방의원 0.9% 등 열악한 수준.

따라서 사실상의 평등을 위한 국가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위반시 권리구제를 명확히 하는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의 우선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분야에서의 쿼터제 도입을 적극 유도하는 효과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문제조정위원회가 효과적 기능을 못하는 점을 시정할 기구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여성관련 행정기관의 기능강화 및 신설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는 여성지위향상 국가기구가 실질적 권한을 가질 때 여성차별철폐정책을 지원 수립하고 실행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장관(제2실)의 기능강화는 필수적이며 교육부에 여성문제 담당부서의 설치가 특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정치 및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참여 지원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과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조치로 꼽힌다.

여성공무원은 남녀구분채용 차별이 없어진 이후 매년 증가, 92년 40.7%를 차지했으나 고급행정직 참여는 3~10% 미만에 불과한 형편이다.